

협력사 행동규범

진영 협력사 행동규범

진영은 협력사와 같이 동반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진영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1. 노동인권

협력사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근로자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직, 임시근로자, 인턴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는 법규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와 권리보호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1) 강제노동 금지

모든 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협력사는 근로자의 이직/퇴직을 불합리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근로자 채용 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2) 아동노동 금지

협력사의 아동 고용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아동'은 만 15세 미만 또는 법규에서 정하는 고용 가능한 최저연령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법정 고용 최저연령보다 높은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나, 18세 미만의 근로자들은 안전보건 측면에서 위험한 업무(초과근무, 야간근무 포함)를 수행해서는 안됩니다.

3) 근로시간 준수

주 60시간 미만 또는 국가가 법으로 규정한 최대 근무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매 7일마다 최소 1일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4) 임금 및 복리후생

임금은 최저 임금, 초과 근로수당 등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모든 임금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5) 인도적 대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육체적 강압, 폭언, 불합리한 제한이 없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방침과 절차를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6) 차별 금지

협력사는 채용과정, 승진, 보상,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과 같은 고용 관행에 있어서 성별, 연령, 인종, 국적, 민족성, 피부색, 성적 성향,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결혼 여부 등에 대한 차별이 없는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법률 또는 작업장의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 또는 채용 후보자에게 차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의료 검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결사의 자유

협력사는 국가가 법으로 규정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인정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할 수 있는 권리와 단체협약과 평화적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가 차별적 대우, 보복조치, 협박, 괴롭힘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해 경영진과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2. 안전보건

협력사는 지속적인 품질 유지와 생산 효율성 향상을 위해 안전보건을 보장하는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하는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하위 협력사와 협업하여 잠재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 산업안전

협력사는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가능성 파악을 위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활동을 통해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위험도를 파악, 평가 및 관리해야 하며, 생산 설비나 기타 설비의 안전상의 위험을 평가하여 그에 따른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안전한 공정의 설계, 예방 정비 안전한 작업 절차, 지속적인 안전 훈련 및 교육, 적합한 보호구 지급 등을 통해 통제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2) 비상사태 대비

협력사는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와 사고를 사전에 파악하고 복구 계획을 포함할 수 있는 대응절차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비상사태 발생 시 보고체계, 비상 대응훈련, 안전한 출구시설 확보, 화재 감지 및 소화장비 등을 확보하여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3) 산업 재해 및 질병 예방

협력사는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예방, 관리, 추적, 보고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는 직원의 신체적 이상에 대한 보고를 장려하고, 산업재해 및 질환 사례를 분류 및 기록하고,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며,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이행하고, 직원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유해인자 관리

협력사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을 파악하고 평가 및 통제해야 합니다. 잠재적 위험 제거 및 생산시설에 대한 개선 등을 통해 유해인자들로 인한 근로자의 안전보건 상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상기의 수단으로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5) 설비안전 관리

협력사는 위험설비를 분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성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물리적 보호장치, 제어장치, 방호장치 등을 제공하고 해당 설비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6) 기숙사 및 위생시설 제공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청결한 화장실과 식수, 위생적으로 식품을 조리 및 보관할 수 있는 식당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는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적절한 비상 출구와 소방시설, 난방, 환기시설, 적절한 개인 공간, 합리적인 출입 권한을 부여하여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7) 안전보건교육

협력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관련 정보는 사업장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되어야 하며, 모든 근로자의 모국어 또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게시되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업무 배치 전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후에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3. 환경보호

협력사는 모든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와 폐기, 산업용수 관리와 재사용, 온실가스 및 대기배출물질 통제 등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환경 법규 준수

기업 운영 상 필요한 모든 환경 인허가(예: 배출/방지시설 설치/운영/변경 신고 등)를 취득, 유지하고 최근 개정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보고 등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 내 물질에 대한 정보 표시, 특정 물질 사용의 금지 및 제한 등과 관련된 국가의 법률 및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2)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에너지 사용 저감

협력사는 생산공정의 개선, 시설의 효율화, 원료 대체, 원료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을 통해 폐수와 폐기물 등 오염원을 최소화하고 자원 및 물(상수, 우수 등) 이용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3) 화학물질관리

협력사는 사람이나 환경에 유해한 모든 화학물질(지정 폐기물 포함)을 파악하고 안전

취급, 운송, 보관, 사용, 재활용 또는 재사용 및 폐기의 안전보장을 위해 식별 표기, 라벨링 등 별도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4) 폐기물 및 폐수관리

협력사는 발생하는 폐기물과 폐수를 관련법규와 규정상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하며, 발생하는 폐기물과 폐수를 배출하기에 앞서 이를 식별, 감시, 통제, 처리해야 하며, 폐기물 및 폐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대기오염관리

협력사는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부식성 가스, 분진, 오존층 파괴 물질, 연소 부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법규와 규정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현황은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해야 합니다.

6)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관리

협력사는 전사 및 사업장 단위로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용 대비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4. 윤리경영

협력사의 모든 경영활동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윤리경영의 실천 및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1) 청렴 및 부당이익 금지

모든 사업 상 거래 관계에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며, 협력사는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 부패행위, 자금세탁, 사기, 내부거래, 부당이득 및 횡령 등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그 밖에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거나 수령해서도 안되며, 이에 대한 감시 및 단속 절차를 이행하여 반부패 법률 자율 준수를 실천해야 합니다.

2) 정보공개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협력사는 정보 공개 관련법과 규정, 업계 관행에 근거하여 경영활동과 성과, 재무 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 및 공개해야 합니다. 공급망 내 관련 분야 실태 및 관행에 대한 기록 위조나 부실표기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3) 지적재산 보호

협력사는 지적 재산권을 존중해야 하고,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진영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4) 개인정보 보호

협력사는 사업과 관련된 협력사, 고객사, 소비자 및 임직원 포함을 포함한 모든 개인 정보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등에 있어 개인정보 취급 및 활용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5) 합법적 물자관리

협력사는 분쟁지역 광물을 포함하여 불법적이고 심각한 인권유린, 환경파괴 등 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해 취득한 원자재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관련 물질의 원산지, 거래처 등을 포함한 모든 공급망 대해 물질 사용 여부를 관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협력사는 진영의 요청 시 원자재의 원산지 및 공급선에 대한 보증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경영시스템

협력사는 본 규범만 아니라 관련 법률 및 규정, 고객 요구사항의 준수를 위해 자체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본 규범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1) 자율준수 의지표명

경영진이 승인한 기업의 준수 의지 및 지속적 개선 의지를 표명하는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 성명서를 협력사 전 작업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성명서는 모든 근로자의 모국어 또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게시되어야 합니다.

2)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경영시스템과 규범 관련 프로그램의 이행 및 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 대표이사는 정기적으로 경영시스템 현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3) 법규 및 고객 요구사항 대응

본 규범의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법률, 규정 및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경영시스템에 반영해야 합니다.

4) 리스크 관리

협력사의 사업운영과 관련된 환경, 산업안전보건, 인권 및 노동 관행, 윤리적 위험을 파악해야 하며, 파악된 위험을 통제 및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규범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목표관리

사회, 환경적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성과 목표 및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목표 대비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6) 교육

협력사의 정책, 절차, 개선목표를 이행하고 해당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자와 근로자를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 및 운영해야 합니다.

7) 임직원 피드백, 참여 및 고충처리

본 규범에서 다루는 조건에 대한 임직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8) 문서와 기록

기업 운영 상 보관되는 문서 및 기록의 작성, 유지는 외부 공시와 관련된 규제를 준수하고, 회사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기밀 관리요건의 적합성에 부합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본 규범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문서화해야 하며, 진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